

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제 16 호	제 5 차	1990. 3. 2	중 재 김 건

의 안 "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" 개정

의결사항 "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"을 풀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
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

제의취지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콘도미니엄업을 여신금지대상에 추가하는 한편, 제주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제무역산업박람회 개최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재의함



< 참고사항 >

제의관계 법규조항

민국은행법 제7조

① (상 락)

② 민국은행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권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민국은행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민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
③ 민국은행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 - ⑤ (상 락)

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개정(안)

면	명	개	정	(인)	비	고				
<p>제1조 ~ 제12조 (생략)</p> <p>(신 설)</p> <p>< 별 표 ></p> <p>여 신 금 지 부 문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세대당 170㎡를 초과하는 주택(아파트 포함)의 건설 또는 매입</p> <p>3. 다음의 업종에 대한 여신</p>	<p>제1조 ~ 제12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 칙</p> <p>이 규정은 1990. 3. 5 부터 시행한다.</p> <p>< 별 표 ></p> <p>여 신 금 지 부 문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세대당 170㎡를 초과하는 주택(아파트 포함)의 건설 또는 매입과 콘도미니엄의 매입</p> <p>3. 다음의 업종에 대한 여신</p>	<p>— 시행일자 명시</p> <p>— 콘도미니엄의 매입을 위한 여신 금지</p>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 류 번 호</th> <th>업 종 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6312</td> <td>주점업(63129해당업종, 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인전용 특수유희음식점의 시설개보수자금, 한국은행출제가 1차에 한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범위내에서 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인전용 한국음식점의 시설개보수자금 제외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 류 번 호	업 종 명	6312	주점업(63129해당업종, 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인전용 특수유희음식점의 시설개보수자금, 한국은행출제가 1차에 한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범위내에서 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인전용 한국음식점의 시설개보수자금 제외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 류 번 호</th> <th>업 종 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6312</td> <td>주점업(단 63129해당업종, 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에 대한 시설개보수자금은 제외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 류 번 호	업 종 명	6312	주점업(단 63129해당업종, 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에 대한 시설개보수자금은 제외)	<p>— 「관광진흥법시행령」 개정(1987.7.1)에 따른 용어정비</p> <p>— 사문화된 조문 삭제</p>
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 류 번 호	업 종 명									
6312	주점업(63129해당업종, 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인전용 특수유희음식점의 시설개보수자금, 한국은행출제가 1차에 한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범위내에서 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인전용 한국음식점의 시설개보수자금 제외)									
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 류 번 호	업 종 명									
6312	주점업(단 63129해당업종, 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에 대한 시설개보수자금은 제외)									

명 명		개 정 (안)		비 고
632 중	관광「호텔」을 제외한 「호텔」업 및 유통급여권을 제외한 여권업('86.'88 숙박대책위원회 지정 숙박업소에 대한 시설자금은 제외).	632 중	관광「호텔」을 제외한 「호텔」업과 간통급여권업 및 <u>콘도미니엄업(단 제주도소재 업소의 국제무역산업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업소에 대한 시설자금은 제외).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규제대상 숙박업소 명목화 및 사문화된 종편 삭제 - 콘도미니엄업 추가 - 제주지역 숙박업소와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숙박업소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
830	부동산업(공정건물 및 서민주택관련 부동산임대업 제외).	830	부동산업(단 <u>공정건물 및 서민주택 임대업은 제외).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용어 정비